보충협의서

갑측: 중국 하남성 상구시 제일고등학교(이하 “갑측”이라 칭함)
을측: 한국 오성고등학교(이하 “을측”이라 칭함)

양측은 2024 년 3 월 26 일『중국 상구시 제일고등등학교와 한국 오성고등학교 협력교육프로젝트 협의서』(이하 “원협약”이라 칭함)를 체결하였습니다. 양측은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의견을 일치시키고 아래와 같이 보충협약(이하 “본협약”이라 칭함)을 체결합니다. 본 보충협약은 원협약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서 원협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, 본협약의 조항이 원협약과 상충할 경우 본협약을 우선으로 합니다. 본협약에서 수정하지 않은 원협약의 기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. 본 협약은 중문본과 한문본 두 가지 문서로 작성하며, 두 문서 내용은 동일합니다.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, 중문본을 기준으로 합니다.

제 1 조 사업관리기구 수정 (원협약 제 5.1 조 대체)

1. 갑을 양측은 공동으로 본 사업 연합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)를 구성하여 사업의 의사결정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. 관리위원회는 총 9 명으로 구성하며, 갑측이 총 의석 중 과반수인 5 석을 차지합니다. 공동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을 두며, 위원장은 갑측이, 부위원장은 을측이 임명합니다. 위원의 임기는 5 년이며,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습니다.

2. 공동관리위원회는 다음 직권을 행사합니다:
(1) 사업관리 규정 및 제도를 제정·수정
(2) 사업발전계획 수립 및 연간 업무계획 승인
(3) 사업 관련 학과기준 심사·확정, 연간 평가 및 총결산 진행
(4) 한중협력교육프로젝트 인재양성방안 심의·확정
(5) 교사 파견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과 교육 품질 관리 감독
(6) 주요 행정책임자 임용 및 해임
(7) 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개선 및 보선
(8) 사업의 변경, 연장 또는 종료에 관해 협력 당사자에 제안
(9) 한중교육협력프로젝트 경비 예산 및 결산 심의·승인

3. 공동관리위원회 의사진행 규칙
(1) 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1 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며,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합니다.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대신 주재합니다. 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영상·전화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참석이 불가한 위원은 서면 대리인을 지정해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. 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(3 분의 2 이상)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(2) 공동관리위원회의 상설 사무소는 갑측이 교내에서 적합한 사무실 1 칸과 전화 1~2 대를 제공합니다.

제 2 조 법률적용 조항 수정 (원협약 제 6.2 조 대체)

원협약의 “본 계약은 양국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양국 법률 모두를 적용한다”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. 본 협약 및 원협약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합니다.

제 3 조 협력기간 수정 (원협약 제 3.1.8 조 수정)

양측은 원협약의 유효기간을 2030 년 3 월 26 일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합니다. 본 협약이 만료된 후에도 양측에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, 협력 종료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자동으로 9 년씩 연장됩니다.

제 4 조 교육, 학적 및 교재 관리 (신설)

1. 본 사업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은 하남성 일반고등학교 학업수준 합격성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모든 과목에 합격한 학생에게 국내 일반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.

2. 을측이 제공하는 해외 교재 및 교수자료는 갑측 내 심사를 거쳐 교육 주관 부서의 보고 및 비준 후 사용합니다.

3. 을측은 갑측의 당건(당의 건설), 사상정치, 품덕교육 관련 모든 관리 규정을 존중하며, 사업 전 과정에서 덕육(덕성 교육)을 근본 임무로 이행합니다.

제 5 조 외국인 교사 파견 및 관리 (원협약 제 3.2.2 조 수정)

1. 한국측 교사는 을측이 파견하며, 관련 교사 자격을 갖추고 중국 내 외국인 교사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외국인 교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, 어떠한 종교 교육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.

2. 원협약의 “갑측이 한국인 교사를 고용해 한국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며 급여를 지급한다”는 조항을 삭제합니다. 갑측은 외국인 교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며, 외국인 교사의 급여 및 모든 비용은 을측의 학력 투자에 포함됩니다. 갑측은 본 협약 및 원협약에 따른 원가 보상 방식으로 을측과 정산합니다.

제 6 조 사업 재무관리 (신설)

1. 본 사업은 비영리 학력 원칙을 준수하며, 갑측 교내에 전용 사업 계좌를 설치해 모든 사업 수입과 지출을 통합 회계 처리합니다. 학력 잉여금은 사업의 교육 및 학력

조건 개선에만 사용하며, 양측에 분배하지 않습니다.

2. 학생 등록금은 갑측이 물가와 교육부의 비준 기준에 따라 징수하며, 학년 초과 선납은 불가합니다. 학생 환불은 엄격히 허난성 교육 및 물가 부서의 통일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.

3. 등록금 및 기타 비용은 인민폐로 징수하며, 학년별 수납이 원칙입니다. 모든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는 사업 종료 후 5 년간 보관하며, 교육·재정·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.

제 7 조 협약 종료 후 재학생 권익 보장 (신설)

본 사업이나 원협약이 종료되더라도, 갑을 양측은 이미 입학한 재학생의 권익을 우선 보호하고 정해진 교육 업무를 지속 수행하며, 학생의 학적 관리, 학업수준 시험, 졸업 및 증서 발급을 보장합니다. 또한 학생 배치 및 환불 등 사후 처리를 책임집니다.

제 8 조 분쟁 해결 (신설)

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협력 과정 중 발생한 문제는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. 협의가 실패할 경우, 양측이 공동 지정한 독립 기관이 분쟁 심판을 진행하며, 이 심판 결과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국 허난성 상구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제 9 조 기타

학력방안, 재무 등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양측은 서면 보충협약을 체결하며, 중대한 사안은 교육 주관 부서에 보고·비준합니다. 본 협약은 중문과 한문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되어 각각 2 부씩 제작하며,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
부록: 『상구시 제일고등학교와 한국 오성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중 고등 협력 프로젝트 인재양성방안』

갑측: 중국 상구시 제일고등학교 　　을측:한국 천안 오성고등학교

법정 대표자: 　　법정 대표자: 장효증